

##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1998. 9. 11 조례 제 135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646호  
2007. 7. 1 조례 제 88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1. 4. 15 조례 제114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용인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4. 15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1. 4. 15>

1. 통합방위 대비 책
2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대책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용 및 지원대책
4. 취약지역 대비 책
5. 통제구역 설정
6.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
7. 「민방위 기본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
8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4. 15>

1.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·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
2.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· 계몽 및 지원대책
3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

##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③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4. 15>

1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

2.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
④ 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1. 4. 15>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2.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

4.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, 수송, 통신, 의료, 장비, 물자 및 전투시설지원에 관한 사항

5. 예비군 사기양양 및 홍보, 기타 필요한 사항

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 <개정 2011. 4. 15>

1. 용인시의회 의장

2.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

3. 용인동부경찰서장

4. 용인서부경찰서장

5. 용인소방서장

6.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

7. 용인우체국장

8.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

9. 육군 제172연대 3대대장

10. 국군 제203기무부대 담당관

##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11. 국가정보원 담당관
12.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장
13.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장
14. KT 용인법인지사장
15.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7. 1>

1.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: 용인시 총무업무담당과장
2. 심리전담당간사 : 용인시 공보업무 담당 담당관, 실·과장
3. 작전담당 간사 : 육군 제172연대 3대대 작전장교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) ① 용인시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한다.

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 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.

제5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2011. 4. 15〉

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
  -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
  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·유지
  - 다.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
  -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
  -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
  -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 실시
2. 개활지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
  - 가. 10년생 이상의 임목
  - 나. 모래병커 또는 연못
  - 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)
  - 라. 기타 장애물로서 체육,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물
3. 호수에 대한 다음 각목의 대비책 시행
  - 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
  - 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

제6조(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46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84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3조제3항제1호중 “총무담당간사”를 “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② 내지 ⑪ 생략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14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